

1. 개정이유

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기준 중 일부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 시 이행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명확화 (안 제10조)

- 1) 수련기관 지정기준 등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

나. 행정처분기준의 폐지(별표4 삭제)

- 1)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,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시정명령의 이행기간) 영 제16조제2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
1.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: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
2.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: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

제19조 중 “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: 2025년 1월 1일
2.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: 2026년 1월 1일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행정처분기준) 영 제1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	제10조(시정명령의 이행기간) 영 제16조제2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 1.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: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.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: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
제19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1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: 2025년 1월 1일 2.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: 2026년 1월 1일